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11. 14. 오세희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18.)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세희의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이 대형 유

통업체이거나 매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등록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제26조의6 등).

아울러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재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9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함.

4.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권칠승의원, 김위상의의원, 김원

이의원, 오세희의원, 장철민의원, 이종배의원, 위성곤의원, 이재관의원, 박용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5.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